

제	호
증 표	
주 소 :	사 진 3cm×4cm
성 명 :	
생년월일 :	
유효기간 : . . . ~ . . .	
위 사람은 「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임을 증명합니다.	
년 월 일	
행정안전부장관·특별시장 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 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	
직인	

70mm×100mm[백상지(150g/㎡)]